

군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장경민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1년 12월 8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9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js9695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군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

(장경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.

발의자 : 장경민, 성복임, 이견행,
홍경호, 신금자, 이길호,
이희재, 김귀근, 이우천

1. 제안이유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군포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적용범위 및 지원범위를 정함 (안 제2조~안 제3조)
- 나.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 정함 (안 제4조)
- 다. 포상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 정함 (안 제5조)

3. 관련법령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

군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군포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군포시 의용소방대(이하 “의용소방대”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제3조(지원범위) 군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
2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의 2에서 규정한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
3.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
4.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4조(재정지원)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
「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포상)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·구호 활동, 화재예방 활동 등에
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